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를)(초안) 의견서〉  
**파주시는 영향범위에 있는 마을(리·동) 단위로  
주민건강영향 순회설명회부터 다시 하라!**

**1. 법원읍의 특징 및 지역의 잠재적 가치**

-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다. 때문에 인구 1만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법원읍은 또 매일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트럭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커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 법원읍을 흐르는 갈곡천은 인근 소규모 사업장과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문산천과 임진강 하구 수질에 영향을 끼치는 갈곡천으로 염색공장 오염물질, 하수처리장 관리 소홀로 인한 오폐수,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변에 비점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녹지도 전혀 없어 비점오염원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 인근에 부지조성중인 법원2산단과 함께 영향반경 내에 천연초, 법원초, 법원여중, 연풍초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있어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법원읍에서는 지난 2016년 하천유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대규모(39기) 선사유적지가 56번 국도 건설중에 발굴되었다. 이는 남한의 유일한 구릉지 선사유적지로 서울 암사동 유적지보다 10기가 더 많은 신석기 집터가 발견된 곳으로 고고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법원읍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울곡선생 유적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 파평읍, 문산읍 등에 산재한 문화유적지와 DMZ, 민간인통제구역을 흐르는 임진강과 연계하여 설계하면 파주시를 평화와 생태, 역사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부각키는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DMZ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민간인통제구역 밖의 문화유역지 주변에도 머물수 있도록 하면 질 높은 생태교육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 그런점에서 법원산단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법원읍을 포함한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잠재적 자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도 신중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다.

- 산업단지의 특성상 한번 건설되고 나면 이후 새로운 시설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고,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산단 주변으로 각종 오염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초기 설계단계 때 최고의 환경·재해예방 시설을 갖췄다고 자부할 만큼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실제 인천의 남동공단도 건설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단이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최악의 공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재평가)(초안)은 주민건강, 대기, 수질, 지형 등에 끼칠 악영향에 비해 너무나 부실하고 안이하게 작성되었다.

특히 대기, 수질 오염 악화가 미칠 영향범위가 상당히 넓고, 유치 업종 및 사용약품으로 인해 주민건강에 끼치는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 의 문제점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요약문 40쪽의 환경영향평가요소와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에 따르면 법원1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업’)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모든 영향에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예측 및 평가 스코핑 설정과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내 저감시설 설치 및 입주업체를 제한 할 수 있다.(초안 614쪽)

### 1) 주민건강 피해 우려

#### ①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피해

이 사업은 “건강예측 요인에 대하여 대상집단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본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노인 등 취약집단에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616쪽)

특히 법원리, 갈곡리, 대능리, 삼방리, 가야리 마을 주민이 영향범위에 있고, 법원초, 천현초, 울곡중고, 법원여중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향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또 해당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 평가서초안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등은 법원1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북서쪽으로 771m이격되어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2산단, 석산개발, SRF제조시설, 염색공장, 대형트럭 등이 미치는 영향과 합산하여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 평가서 초안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가정할때 ‘영향이 미미하다’고 간과할 일이 아니다. 특히 대능리 마을과 축산 농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발파소음도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발파지역을 이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33쪽)

#### ②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 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

720개소, 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종(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종(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인근 법원2산단과 합산한 누적영향평가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한 비발암물질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들 약품이 악취 발생 등의 성질을 갖고 있고 다른 화학물질이나 기타 대기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627~635쪽)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대기오염물질 발생업체를 입주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 ③ 공사시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m<sup>3</sup>에 달한다. 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 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 2)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이 사업지구의 북쪽으로는 갈곡천, 남쪽으로는 삼방천(애룡저수지)이 위치하여 문산천, 임진강, 한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는 수계에 위치하고 있다. 공사할 때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우려된다. 또 운영시에도 공장폐수 및 폐수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 초안 351쪽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폐수의 경우 삼방천이 갈곡천을 거쳐 문산천, 임진강, 한강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실제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법원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폐수로 인해 해양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와 하구특성상 유속이 느린 문산천의 경우 폐수로 인한 오염물질이 저수지와 하천바닥에 옹기되어 퇴적되어 심각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물고기 떼죽음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인근 산업단지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옹기되어 축적되어 물고기 떼죽음과 심각한 악취 등을 발생시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릉천 오염사태를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 3) 동식물 생태조사는 년 4회 이상하고 야간조사, 홍수기 조사 실시해야

동식물 생태조사는 2017년 2월21일과 5월12일 두차례만 실시했고, 조사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류, 양서류, 곤충, 식물 등이 누락돼 있다. 맹꽁이, 새매, 부엉이, 소쩍새 종류 등 멸종위기종 다수도 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여름철새, 겨울철새, 이동기 철새들도 모두 누락됐다.

동식물 생태조사는 년 4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야간조사, 홍수시 양서류 조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

## 3.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 도입해야 한다

### 1) 피해예상범위

특히 대기환경과 수환경은 피해 범위가 해당 법원읍에 한정되지 않고 하천의 흐름, 바람의 방향에 의해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문산읍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세먼지, 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 악취 등은 지형특징을 고려할 때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 월롱면, 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 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친다. 최악의 경우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폐수는 삼방천과 갈곡천을 거쳐 문산천, 임진강, 한강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과 별도로 진행중인 법원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해양환경까지 악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더 넓은 범위에 대해 이뤄져야 하며 대기 및 미세먼지 발생업체인 유신석산개발을 비롯한 채석장, 연풍리에 계획중인 아파트 건설계획,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을 준비중인 법원2일반산업단지와 합산한 총량을 갖고 예상해야 한다.

폐수가 하천을 비롯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역시 법원2일반산업단지와 기타 폐수발생업체를 합산한 총량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단지는 한번 건설되고 가동되기 시작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엄격해야한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 2) 더 넓은 범위의 주민들에게, 세분화된 순회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 수질, 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원읍 주민들 대부분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있었는지 모른다.

특히 농촌마을은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고령인구가 많다. 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거주하는 울곡아파트 등지의 주민들은 마을 이장, 반장들과 거리가 있어 이들의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바람방향에 따라 혹은 폐수로 인한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파주읍, 월롱면, 문산읍 주민들도 의견수렴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

설명회부터 다시 하되 그 방식과 내용은 ① 최소한 법원읍과 파주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② 마을 주민들 접근이 용이하도록 리와 동단위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③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민건강피해영향을 중심으로 ④ 영향 범위 내 학교의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시 해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 3)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 거쳐야

① 공청회 역시 우려되는 지점도 주민들이 밀착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수차례 개최할 필요가 있다.

② 법원읍과 파주읍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도 접근이 안된다.

- ③ 영향범위내 있는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 ④ 주민의견서 양식은 시골어르신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어렵게 느껴진다. 설명회이후 지역과 대상특징에 따라 면접설문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재가동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찬반 양쪽의 의견을 들어가며 국가의 주인으로써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였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